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21 .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12 . 29 .
- 다. 상정일자 : 1998. 12. 29 . 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종전 군세조례에는 지방세법에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체계상 미비함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납세의무자, 납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기, 기타 필요한 상황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 및 고시와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
- 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과 납부세액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
- 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특수직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

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인  
읍면의 정하는 지역으로 개선함.

- 라.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 기한연장에 관한 규정 개선
- 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명시 및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관한 규정 신설
- 바. 주민세의 신고 납부기한과 미이행시의 가산세를 포함한 보통  
징수를 규정하고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오류발생시 수정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사.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와 세율,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자. 농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차.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납부, 가산세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카. 도축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
- 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  
기준 및 납기, 부과징수, 세액조정, 신고의무, 공람 및 이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 파.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 납세기준일과 납기 등의 규정을 신설
- 하.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납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  
에 관한 규정을 신설

#### 4. 검 토 의 견

- 가. 본 조례안은 '97. 12. 9일 강원도(세정13400 - 802)의 지시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나. 현행 조례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위임된 조례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항인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조례체계가 미비하므로 금회 세부사항과 조례체계에 맞게 재정비코자 하는 것임.
- 다.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문제점이 없음.